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2일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6.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7.16.) 상정,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9.3.)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승수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오)

- 방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 사유를 확대하려는 김승수의원안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상화될 사안으로, 의결정족수를 두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검증 과정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방통위원회 의록 작성·보존 관련 사항도 기본규칙에 명시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재확산 등의 문제를 심의하는데 이를 생중계하고 공개하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 자체와 반하는 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최형두 위원).

- 방심위 회의와 관련해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가 고장이 나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이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해 임명이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불비로 인한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음(김현 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표결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

8. 기타사항

입법청문회 실시(2024.6.21.)